

2026년 제2차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8조, 「2026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따라 「2026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5. 11.

광주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 공고기간 : [2026. 5. 11.\(월\) ~ 2026. 5. 22.\(금\) 18:00](#)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1개월 이상 수급받고 있거나, 취업지원서비스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지원규모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 * 단,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구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일반기업 (SVI 양호 이하)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	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	30인 미만

▶ 지원금 산정방법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월 174시간)으로 일정액 지원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비례지원
- 참여근로자의 결근, 조퇴·지각(유급휴가제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근무시간 적용

○ 지원조건 :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금 신청

- 신규고용 6개월 후* 매월 기업의 지원금 신청에 따라 지급
 - * 최초 6개월분 임금은 일괄 신청 및 지급(이후 매달 지급)
- 신규고용일이 공고 이후 약정 이전인 경우 고용월 기준 6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나, 지원금은 약정월 이후분만 지급

○ 지원기간(1회 기준)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 총 지원 기간 : 최대 3년간 지원(2년+1년)
 - * 2년 지원+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예비인증 동일 적용)

2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추가 지원)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 대상으로 지역자율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참여근로자 고용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 참여근로자 1인이 둘 이상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추가지원금은 동일함

- 계속 고용기업 지원

-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 대상 월의 말일 기준)

- 청년 고용기업 지원

- * 청년기준 : 채용 월 기준 만 15세이상 만 39세 이하
(연령기준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 * 청년근로자 : ①취약계층이면서 ②청년인 참여근로자 (두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 * 장애인 기준 :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 취약계층 판단기준에 따름

- 고령자 고용기업 지원

- * 고령자 기준 : 만 55세 이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약계층 판단기준 제2호)

○ 지원수준

구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일반기업 (SVI 양호 이하)
추가지원금액	360,000원	280,000원	200,000원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 계획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별 지원금 산정·지원

3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기업('26년 4월말 기준)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유급근로자가 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용요건이 지원 개시 이후 미충족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중지하고 요건을 다시 갖춘 시점부터 지원(단, 미충족된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자체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금 중단 없이 계속 지원)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 가능
- 참여제한 기업

-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26년 4월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직전월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④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2]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⑤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2년을 지원받은 이후 인증사회적기업 자격으로 2년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인증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에 한정

- '24~25 광주다운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 및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 기간 무관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의 최대지원기간(5년)은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격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며, 본 사업의 총 지원 기간(최대 2년 + SVI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⑦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⑧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⑨ 광주광역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 참여제한 근로자

-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 ▶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 ▶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

- (종전)일자리창출사업(지자체 자체 일자리창출사업 포함)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단, 지원 조건인 '6개월 고용유지기간' 산정은 해당연도 사업공고일 이후로부터 기산)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 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만 인정)
- 국민취업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 후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 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 지원 조건인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의 산정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일 이후로부터 기산

- ▶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단체에서 퇴직한자
-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 가능)
-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 ▶ 그 밖에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 참고사항

- ①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조치)** 참여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보류, 3개월 이상 도과 미제출 시에는 약정해지
- ② **(약정해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 받지 못한 경우
- ③ **(SVI 등급 변경 반영)** 지원약정 기간 중 SVI 평가등급 상향 시* 익월부터 SVI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기준금액 변경

* SVI 등급 적용은 지원약정 기간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

예) “양호”→“우수” (상향)변경 시 “우수” 등급 적용

“우수”→“양호” (하락)변경 시 기존 “우수” 등급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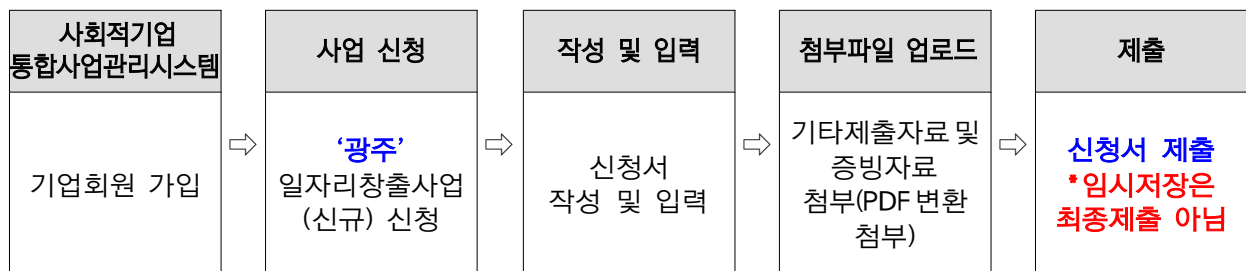
4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대면심사** ※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 (인증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심사항목 : 사회적 가치(30점), 고용성과(30점),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 기업혁신(10점) [별표3]
 - ▶ 심사점수 60점이하 기업은 미선정
- 기타 심사·선정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업무지침」 참고

5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6. 5. 11.(월) ~ 5. 22.(금) 18:00까지
 - ▶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6. 5. 26(화) ~ 5. 27.(수) 18:00
 -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 반려
 - ▶ 접수 마감 이후 수정 불가하며, 접수 기간 내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접수 마감일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주의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 전산 관련 문의 : 사회적기업 포털 시스템 이용 문의(☎ 1661-4006)

○ 제출방법



- 제출형식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포함하여 PDF 파일로 변환·제출**
 -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 서식 및 별지 참조

※ 파일명은 반드시 아래 서류별 파일명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 PDF로 제출

- 제출서류는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진촬영본, 2쪽 자료 등 알아보기 어려운 자료 지양(파일 이름과 내용이 상이하거나, 중복 또는 관련성이 낮은 자료를 묶음으로 과다 제출 시 심사과정에서 누락 될 수 있음)

①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 ② 사업계획서[붙임 제2호 서식]

(파일명)「1-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기업명.pdf」

③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3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

※ 공고일 전월말 기준 최근 6개월이내 실적만 인정

(파일명)「2-사회서비스공헌실적 보고서 및 증빙자료- 기업명.pdf」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4호 서식]

(파일명)「3-동의서-기업명.pdf」

⑤ 사회적가치(SVI) 측정 보고서[붙임 제5호 서식] 및 증빙자료(25년 실적 기입)

※ 202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이력이 있는 경우

- '2025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보고서(<https://www.seis.or.kr/svi>)' pdf 파일로 대체

※ 202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이력이 없는 경우

- [붙임 제5호 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파일명)「4-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기업명.pdf」

⑥ 2026년 4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제6호 서식] 및 근로계약서, 취약계층 증빙자료

(파일명)「5-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등-기업명.pdf」

⑦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 이전 1년분)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자료('25.2월 ~ '26. 4월)

※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자료제출

(파일명)「6-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기업명.pdf」

⑧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24년 결산 및 '25년 12월말 기준 가결산(매출실적 등) 관련 자료,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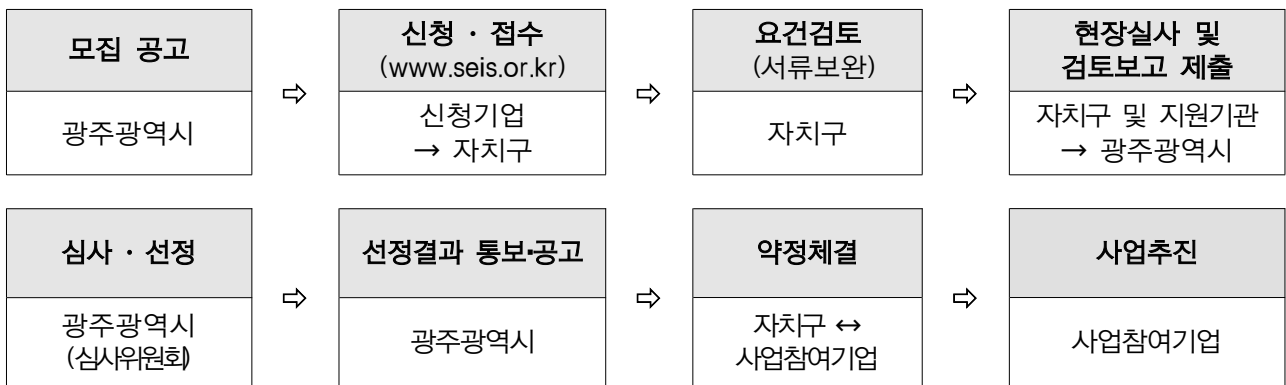
(파일명)「7-재무제표 등 사업실적-기업명.pdf」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6 선정절차 및 결과 통보

○ 선정절차



- **결과 통보** : 선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확인,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관할 구청 통보

7 기타사항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 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보완하더라도 심사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노동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팀 ☎ 062-613-1292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동구청	마을자치과	062)608-4633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	062)360-7622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062)607-2666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62)410-6584
광산구청	시민경제과	062)960-8402

-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정책팀 : ☎ 062-531-6667~8(내선1번)

[별표1]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 (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 (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별표2]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 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3]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 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목적 재투자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고용성과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 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건실성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 평가
기업혁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러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 평가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① 예비사회적기업: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② 사회적기업: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 ④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분) 확인자료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참여 신청 직전월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 / 12개월
근로자 현황의 전체유급근로자수: 재정지원 사업 신청 당시 전체유급근로자수
-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7)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알선 동의 여부: 참여근로자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을 원할 경우에 동의 여부 체크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p>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p> <p>- 산출근거</p> <p>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p> <p>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p> <p>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p> <p>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상품분류</th> <th>평균단가</th> <th>산출근거</th> <th>연매출액</th> </tr> </thead> <tbody> <tr> <td>문구류</td> <td>2,000원</td> <td>2,000X5,000개X12개월</td> <td>120,000,000원</td> </tr> <tr> <td>의류</td> <td>30,000원</td> <td>30,000X500개X12개월</td> <td>180,000,000원</td> </tr> <tr> <td>전자제품 액세서리 류</td> <td>50,000원</td> <td>5,000X2,000개X12개월</td> <td>120,000,000원</td> </tr> </tbody> </table>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붙임 제3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1] 참조)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 ¹⁾		할인 제공형 ²⁾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명)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kg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kg 당 600원)

[붙임 제4호 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등 록 번 호	

※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 측정 대상년도는 **2025년**을 의미
-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예시, 측정기관 의견 기재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5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 및 창고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정보통신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기업규모 : 하단의 업종분류에 따라 25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재

※ 중기업과 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개정) 대분류 참조)		소기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A)	80억원 이하
2	광업(B)	80억원 이하
3	제조업(C)	100억원 이하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120억원 이하
5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E)	30억원 이하
6	건설업(F)	80억원 이하
7	도매 및 소매업(G)	50억원 이하
8	운수 및 창고업(H)	80억원 이하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억원 이하
10	정보통신업(J)	50억원 이하
11	금융 및 보험업(K)	80억원 이하
12	부동산업(L)	30억원 이하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0억원 이하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30억원 이하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
16	교육 서비스업(P)	10억원 이하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0억원 이하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30억원 이하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10억원 이하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
21	국제 및 외국기관(U)	-

6.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2. 측정지표

측정지표

1.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			
	측면	분야	대상	활동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 사항																				
<p>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p>	<p>① 기업 외부 운영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과정, 이용자의 사용, 기타 측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서비스의 사회적가치) 기업이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 (기타 사회적가치) 상기 항목 외에 외부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 <p>② 외부 운영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사례의 측면, 분야, 대상, 활동을 설정하고 다음 페이지 사례를 참고하여 내용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가치 1) 측면, 2) 활동, 3) 분야, 4) 대상 네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포함이 되어야 한 개의 사례로 인정 * 사례 간 네 가지 요소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사례와 분야, 대상, 활동이 명확하게 구분될 때(예: 분야와 대상은 같으나 활동이 다를 때) 한 개의 사례로 추가 인정 <p>③ 기타 사례의 경우에도 타 측면의 사례와 명확하게 구분될 때 한 개의 사례로 인정(예: 푸드, 라이프스타일, 지속가능 패션, 폐기물 저감, 탄소배출량 감축 등)</p> <p style="text-align: center;">【 기업 작성예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측면</th> <th style="width: 25%;">분야</th> <th style="width: 25%;">대상</th> <th style="width: 25%;">활동</th> </tr> </thead> <tbody> <tr> <td>제품 및 서비스 판매</td> <td>지역경제 발전을 위해</td> <td>지역농가와 협력하여</td> <td>제품 판매를 하여 소득을 창출</td> </tr> <tr> <td>제품 및 서비스 생산</td> <td>지역복지 개선과 관련하여</td> <td>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td> <td>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td> </tr> <tr> <td>이용자</td> <td>지역 환경개선을 위해</td> <td>청년을 대상으로</td> <td>환경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기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타 기업 외부 운영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관련된 활동 등을 기재</p>	측면	분야	대상	활동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농가와 협력하여	제품 판매를 하여 소득을 창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지역복지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이용자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기타			
측면	분야	대상	활동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농가와 협력하여	제품 판매를 하여 소득을 창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지역복지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이용자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환경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																		
기타																					

○ 증빙자료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2.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복리후생비	- 지급 내용 / 대상자 수 / 금액(00천원)																																		
	근로자 성과급	- 지급 내용 / 대상자 수 / 금액(00천원)																																		
	시설투자비	- 투자 내역 / 금액(00천원)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22 846 600 880">구분</th> <th colspan="2" data-bbox="600 846 1423 880">내용</th> <th data-bbox="1278 880 1423 913">금액(천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22 880 600 981" rowspan="2">①지역사회 재투자</td> <td data-bbox="600 880 791 913">제공기관</td> <td data-bbox="791 880 1278 913">제공내용</td> <td data-bbox="1278 880 1423 913"></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3" data-bbox="791 981 1278 1014">소 계</td> <td data-bbox="1278 981 1423 1014"></td> </tr> <tr> <td data-bbox="422 1014 600 1153" rowspan="3">②사회 서비스 제공</td> <td data-bbox="600 1014 791 1048">제공기관</td> <td data-bbox="791 1014 1278 1048">제공내용</td> <td data-bbox="1278 1014 1423 1048"></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3" data-bbox="791 1153 1278 1187">소 계</td> <td data-bbox="1278 1153 1423 1187"></td> </tr> <tr> <td colspan="3" data-bbox="791 1187 1278 1220">총 계</td> <td data-bbox="1278 1187 1423 1220"></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금액(천원)	①지역사회 재투자	제공기관	제공내용					소 계				②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제공내용								소 계				총 계			
	구분	내용		금액(천원)																																
	①지역사회 재투자	제공기관	제공내용																																	
	소 계																																			
	②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제공내용																																	
소 계																																				
총 계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 사항
<p>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p>	<p>① 복리후생비: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 복지 및 후생을 위해 지출한 내역 기재 (예)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명절 상여금 30만원 지급, 통근차량 제공 - 증빙자료: 직원 대상 복리후생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p> <p>② 근로자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금전 내역 지급 유무 기재 (예)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 증빙자료: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p> <p>③ 시설투자비: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예)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p>
<p>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p>	<p>① 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예)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p> <p>②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예)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 (환산금액: 80만원)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p>
<p>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p>	<p>○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예)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 참여(임직원 봉사활동)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p>

○ 증빙자료

- 조직 내부활용: 2025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복리후생비 관련 기안서 및 지출증빙, 근로자 성과급 지급 관련 기안서 및 이체확인서, 시설비 투자내역 등
- 조직외부활용: 2025년 기부금 영수증,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회공헌(봉사활동) 결과자료(사진, 보고서, 공문 등)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측정지표

3.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	
	-	
	-	
	-	
	-	

*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	착안사항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	① 지역은 시·도의 관할 구역,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생활권 전체를 의미(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② 사회적경제기업 및 당사자조직 협의체 외 지역사회의 공공·민간기관 포괄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③ 협력은 사회적가치 실현 및 확장을 위한 사회적 임팩트 증대, 기술 및 자원 공유, 시장 확대, 비용 절감, 위험 분산,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정책적 영향력 제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등의 목적과 형태를 포함하는 활동을 의미함 ④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연 2회 이상) 협력활동만 인정 ⑤ 지역사회 기관 간 정기적 구매·판매실적도 협력활동 내용으로 인정 ※ 진흥원 및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업무가 본업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

【 기업 작성예시 】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OO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1회
OO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1회
OO 어린이집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 증빙자료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양해각서(MOU)(협력기관명, 목적, 협력범위 및 방법, 횟수, 운영방안, 유효기간 항목 포함),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관련 보고서(협력기관명, 목적, 협력활동내용, 일시, 장소, 대상, 비용, 역할분담, 의사결정구조 임직원 참여여부, 목적달성여부, 활동사진 항목 포함), 언론보도자료, 정기회의록 등 인적 대상 활동인 경우 참여자 명단 첨부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판단기준	내 용	
과정의 혁신	구분	내용
	투입의 혁신	① (전문인력 도입) - ② (R&D 투자) -
	활동의 혁신	③ (경영시스템 개선) - ④ (기업 내·외부 소통노력) - ⑤ (기술 개발) -
	기타	⑥ (기타) -
혁신의 결과	구분	내용
	① (재무 성과)	-
	② (고객 만족)	-
	③ (기술적 성과)	-
	④ (기타)	-
※ 과정의 혁신에 따른 혁신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기재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과 그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

- 착안사항 항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판단 기준	착안사항
-------	------

구분	내용
투입의 혁신	① (전문인력 도입) -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기술사,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자 등 전문인력 자격 사항은 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② (R&D 투자)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기술개발비 등
과정의 혁신	③ (경영시스템 개선) -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④ (기업 내·외부 소통노력) - Bottom-up 방식의 사내 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 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기술 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등 설치, 신제품 출시 등
기타	⑥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 노력 기재

구분	내용
① (재무 성과)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투자 유치 또는 지원사업 선정 등 과정의 혁신에 따른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증가 또는 비용 감소 등
② (고객 만족)	이용자 수 증가,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재구매율 증가, 고객만족도 증가 등
③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출원·등록, ISO 등 국제 인증 여부 등(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2023년 이전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실적 인정)
④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의 결과를 정량적 기재

※ 과정의 혁신에 따른 혁신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붙임 제6호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2026. 4월 말 기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평균 임금(원) ③	근로 시간 ④	고용 형태 ⑤	직종 ⑥	사회적 기업관련 정부지원 여부	기타정부 지원여부
1	홍○○	2001. 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 4.1	여	결혼이민자	16.3.1	1,500,000	40	무기 계약직	단순 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여성가장, 난민 등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취약계층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